

제260회 임시회

2007. 5. 14(월)

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정자치위원회
전문위원 연기봉

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7년 4월 9일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4월 11일

3. 제안이유

가.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이 국가직 및 타 시·도의 기준보다 낮아 시험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,

나.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현실화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가. 현행 [별표]의 기준에 의하여 운영해 오던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 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2조) <별지 1>

나. 제4조(수당지급의 제한)를 제2조제2항으로 함.(안 제2조)

5. 검토의견

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직 시험과 지방직 시험에 대한 각종 수당지급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며,

또한, 각종 시험수당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급기준이 변할 때마다 조례 개정을 고려해야 하는 입법상의 비효율성을 함께 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취지와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붙임 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